

★ ◎

문서번호	일자리정책과-1037
결재일자	2021.1.18.
공개여부	비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일자리창출팀장	일자리정책과장	기획재정국장	
협 조				

고맙습니다
'필수노동자'

2020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결과 보고

2021. 1.



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[√]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[√] 공약(약속)사업 [] 계속사업 [] 인센티브/공모사업 []
소통·갈등분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[√] () 무 [] ● 전 문 가 : 유 [√] () 무 []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[√] () 무 [] ● 갈 등 발 생 요 인 : 유 [] () 무 [√] ● 갈 등 예 방/해 소 대 책 : 유 [] () 무 [√]
여 성 친 화 시 도	성평등 [] 안전·편의 [] 가족·공동체회복 [] 여성참여 []
아 동 친 화 시 도	아동권리 보장(생존권·보호권·발달권·참여권) []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[]
기 고 려 사 항 타	일자리 [√] 환경영향 [] 안전 [] 유지비용 [] 바른 공공언어 [] 성인지 [] 취약계층 [] 장애인 [] 디자인 [] 공직선거법 []
타 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종 앙 부 처 : 유 [] () 무 [√] ● 서 울 시 : 유 [] () 무 [√] ● 기 업 : 유 [] () 무 [√] ● 민 간 단 체 : 유 [] () 무 [√]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[] 보도자료 [] SDTV [] 뉴스레터 [] 성동구소식지 [] 기고문 [] 전자행정서비스 [] SNS [] 기타(리플릿 등) [] 없음 []

● **홍 보 제 목 :**

● **중점 홍보사항**

-
-
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‘홍보제목’ 을 선정 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결과 보고

2020년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I

추진배경

- 코로나19 장기화로,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-covid19 시대로 이행
- 이에,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, 돌봄 서비스 종사자,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경비, 환경미화, 마을 버스 운송 종사자 등, 이른바 '필수노동자'의 중요성 부각
-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필수노동자 보호·지원 대책 마련 필요

II

추진근거

- 서울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
〔구청장 방침, 일자리정책과-17248호(2020.9.17.)〕

III

추진방향

-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,
-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원 정책을 선도하며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의거 기반 구축 및 방역강화,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

1 추진경과

□ 조례제정

- 2020. 4. 성동형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기획
- 2020. 5.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해외사례 조사(미국, 영국, 캐나다)
- 2020. 6 ~ 7. 성동구 필수노동자 현황조사 및 조례안 마련
- 2020. 7. 입법예고 (7. 9 ~ 7. 29)
- 2020. 8. 7. 성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(제374회)
- 2020. 9. 2. 성동구의회 의결
- 2020. 9. 10.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

□ 사업추진

- 2020. 9. 17 .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
- 2020. 9. 24.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위촉, 위원회 개최
- 2020. 9. 25. 제1차 성동형 필수노동자 물품 지원(마스크, 손소독제)
- 2020. 9. ~ 필수노동자 존중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 - 언론홍보, 동영상 제작, “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” 캠페인, 정책토론회 등
- 2020. 10.~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
- 2020. 11. 6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
- 2020. 12. 17. 제2차 성동형 필수노동자 물품 지원(마스크, 손소독제)
- 2020. 12. 18.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2차 회의개최 및 용역 중간 보고 (서면)

2 지원 대상

□ 성동형 필수노동자 약 6,342명

- 공공·준공공: 사회복지 및 돌봄, 보육 서비스 종사자 4,486명
- 민 간: 마을버스, 병원,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1,856명

(2020.12. 기준)

분 야	종사업종	인 원	관련기관
총 계		6,342	424개소
복지, 돌봄	요양보호사, 생활복지사 등	2,656	자활센터, 노인복지센터, 돌봄센터 등 115 개소
보 육	보육교사, 조리사 보육도우미 등 보육종사자	1,830	국공립,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175개소
공동주택	경비, 청소 노동자	1,629	공동주택 119개소
운 송	마을버스 운전 종사자	131	운수회사 7개소
보건·의료	청소, 경비, 급식 등 의료지원 종사자	96	병의원 8개소

※ 조사시기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

※ 성동형 필수노동자의 기준

구 분	필수노동자의 기준
필수노동 기준	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보호, 일상생활 유지, 사회기능 보전을 위해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
대면업무 기준	재난위험에 노출되거나 대인접촉을 수반하는 업무
지역적 범위 기준	성동구 관내에서 활동하며 주민의 생활유지 및 복리증진에 기여

<성동형 필수노동자 정의>

공공 안전, 공공 관리, 의료, 돌봄, 복지, 보육, 물류, 운송 등 재난시에도 사회기능 유지,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 보호,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(대중 또는 위험한 환경에 직면)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업종 종사자

3 지원 사업

□ 총 9개 사업, 458,273 천원

구 분	사 업 내 용	소요예산(천원)
	총 계	458,273
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	○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(20.9.10. 공포)	-
	○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- 총 9명 (위원장 부구청장, 임기2년), 총 2회 개최	590
	○ 실태조사 연구용역: 실시 중 (2020년 11월~2월) - 필수업종의 범위 기준 선정, 지원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	49,412
	○ 필수노동자 존중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- 언론홍보, 동영상 제작, 캠페인, 정책토론회 등	5,220
	○ 정부정책 견인 및 정책확산 기여 -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 등	-
필수노동자 방역강화	○ 성동구 필수노동자 안전물품(마스크, 손소독제) 지원 - 1차(20. 9.25.): 기부 마스크 포함 316,600장, 기부 손소독제 포함 24,224개 지원 - 2차(20.12.17.): 마스크 190,260장, 손소독제 25,368개	342,816
필수노동자 건강보호	○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: 건강관리과 - 서울시 지원 중복 제외 필수노동자 1,587명 (접종기간 : 2020.10.22.~12.14.)	60,235
	○ 심리치료 지원 사업: 질병예방과 - 온라인 심리검사 및 비대면 상담서비스 제공 (전화, 홈페이지 등) - 필수노동자 156명 지원 (2020.12.31. 기준)	
	○ 코로나19 무료검사: 질병예방과 - 누구나 코로나19 검사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으로 지원 중단 (2020.12.14.~2021. 2.14.)	

1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

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일자리정책과

□ 조례개요

- 조 례 명: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공포일자: 2020. 9. 10.
- 관계법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
- 제정배경

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 (총 15조로 구성)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제1조~제2조)
 - 필수업종, 필수노동자, 대면업무에 대한 정의
- 구청장의 책무, 필수업종의 적용대상(제3조~제4조)
 - 적용대상: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성동구에 소재하는 사업장
-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(제5조~제6조)
 - 필수업종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
-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(제7조)
 -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
 -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
-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(제8조~ 제13조)
 -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됨.
-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등과 협력체계 구축(제14조)
-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제15조)

②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운영

일자리정책과

□ 위원회 개요

-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명 칭: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
- 구 성: 10인 이내(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최대 9명)
 - 위원장(부구청장), 부위원장(위원중 호선), 구의원 1인, 전문가 등
 - 성별안배: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임 기: 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
- 기 능: 필수업종 지정, 관련사업 추진 등에 관한 심의

□ 위원 현황 9명(위원장 및 위원)

※ 간사(일자리창출팀장)

연번	직 위	성 명	연번	직 위	성 명
1	위원장(부구청장)		6	한양대병원 기초실장	김 혁
2	성동구의원	남연희	7	서비스연맹 조직실장	강병찬
3	복지정책과장	강종식	8	연세대교수	최영준
4	성동구 돌봄네트워크 대표	홍완식	9	노동교육센터 늘봄 센터장 공인노무사	김민아
5	성동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	홍부연	간사	일자리창출팀장	박미자

□ 위원회 개최

구 분	1차 위원회	2차 위원회
개최일시	‘20.9.24.(대면)	‘20.12.18.(서면)
심의안건	- 위촉장 수여 - 부위원장 선출(부위원장:홍완식) -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토론 및 심의	- 2020년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21년도 사업추진 계획 -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 경과 보고
소요예산(천원)	350	420



③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

일자리정책과

□ 용역 개요

- 용역목적: 성동구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조사·분석을 통해 '성동형 필수노동자'를 정의하고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을 제안
- 용역기간: '20. 11. ~ '21. 2.
- 수행기관: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이승운 교수)
- 용역내용
 - 해외 필수노동자 지원사례 및 관련 정책 분석
 - 성동구 필수노동자 필수업종의 범위 선정, 지원정책 도출
 -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방향성 제시
- 소요예산: 49,412천 원

□ 용역보고회 개최

구 분	착수보고회	중간보고(서면)
개최일시	'20.11. 6.(대면)	'20.12.18.(서면)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』 연구방향 및 논의 - 관련부서장 및 연구용역진 의견 교환 - 구청장 및 부구청장 당부사항 반영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차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대상 연구용역 중간 경과 보고 (서면) -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위원별 연구용역 중간 보고 관련 의견 제출



④ 홍보 등 캠페인 활동

일자리정책과

공보담당관

□ 개 요

- 사업목적: 필수노동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진작하고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진행
- 추진방법
 - 온·오프라인 홍보: 언론보도, 성동구 소식지, 성동구 SNS, 유튜브 등 채널 활용 홍보
 - 홍보용 영상 제작: 영상중심 대중매체 전파 및 성동구 SNS, 유튜브 등 채널 활용 홍보
 - 구청 앞 대형 글판 게시
 - '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' 캠페인 진행
 - ⇒ 염태영 수원시장,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릴레이 참여
- 소요예산: 5,220천 원 (홍보 영상 제작비)

□ 홍보 실적

- '20. 9.21. 한겨레 '비대면 일상' 떠받치는 필수 노동자 등 95건
- 2020년 성동구 언론보도 중 단일주제 언론노출 최다 실적

		
<p>구청 앞 대형 글판 게시</p>	<p>필수노동자 카드뉴스</p>	<p>'고맙습니다, 필수노동자'SNS캠페인 (정원오 성동구청장)</p>
		
<p>KBS 9시뉴스(9.15) 비대면 사회의 연결고리... '필수노동자'</p>	<p>MBC뉴스테스크(9.22.) 당신의 위험을 짊어준 필수노동자</p>	<p>KBS 특별 생방송(10.23)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필수노동자 조명</p>

□ 필수노동자 지원 정부 법령안 및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사례

-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('21.1.5.~1.24.)
- 서울시 및 전국 23개 지자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('21.1.13.기준)

□ 범정부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대책 추진 (성동구 필수노동자 사업추진 모델 기반)

- '20. 9.22.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'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' 주문
- '20.10. 3.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 성수동 태진운수 현장 방문
버스운전기사 건의사항 청취 및 여당차원 대책마련 약속
- '20.10. 6.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'범정부 태스크포스(TF)' 출범
- '20.10. 7. 문재인 대통령 돌봄노동자 영상회의
'필수노동자 국가보호 추진,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모범'
- '20.12.14. 정부합동 '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'안 발표
- '21. 1.15.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원 정책 발표(고용노동부)
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일환

□ 정책확산 노력

- '20. 9.11. '목민관클럽'10주년 기념 국제포럼 온라인 토론회
-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화두 제시
- '20. 9.16.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주최 토크 콘서트
-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
- 필수노동자 공제회 설립 필요성 논의
- '20.10. 6. 국회 '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' 토론회
- '20.10. 8. 청와대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영상 간담회
- '20.10.23. 서울시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
- '20.12. 7. 2020 서울 인권 컨퍼런스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사례발표

※ 수상실적: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위원회 유공표창 수상

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공로 단체 개인 표창 (전체 21점 중 서울시 유일 수상)


2 필수노동자 방역 강화 (안전용품 지원)

일자리정책과

총무과

사업목적: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방역강화

자원방법: 각 부서별(해당 직종) 안전물품 포장 후 배부

구분	지원일시	지원대상	지원물품			패키지
			마스크(KF94)	손소독제	격려편지	
1차	'20.9.25.	6,332명	316,600장 (인당 50장)	24,224개 인당 4개 (70ml, 300ml)	6,332장	
2차	'20.12.17.	6,342명	190,260장 (인당 30장)	25,368개 인당 4개(70ml)	6,342장	

소요예산: 342,816천 원

구분	합계	지원물품		
		마스크	손소독제	격려편지 제작 등
1차	248,121천원	201,600천원 (900원*224,000장) ※ 85,950장 기부물품	34,400천원 (800원*43,000개) ※ 1,859개 기부물품	12,121천원
2차	94,695천원	85,995천원 (450원*195,000장) ※ 1,755천원 할인	1차 안전물품 지원 시 잔여분 사용	8,700천원

※ 「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물품 구매를 위한 재난예비비.기금 사용 계획」 관련 총무과 예산으로 사용

3 필수노동자 건강보호

1 필수노동자 무료 독감예방접종


건강관리과

- 사업목적: 대면업무 수행 필수노동자 전염병 확산 방지
- 사업내용: 필수노동자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
- 사업기간: '21. 10. ~ 12.
- 추진실적: 성동형 필수노동자 1,587명 (2020 한시적 확대된 지원대상 제외)
※ 2020년 한시적 독감예방접종대상 지원 대상 확대
 (시비 및 특별교부금 지원) : 만 62~64세 어르신, 보육교사, 공동주택 인력 등
- 소요예산: 59,863 천원 (37,720원*1,587명)

2 필수노동자 '심리상담서비스' 운영

질병예방과

- 사업목적: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심리 치유를 위해 심리 상담서비스 제공
- 사업내용: 온라인 심리검사, 심리상담 지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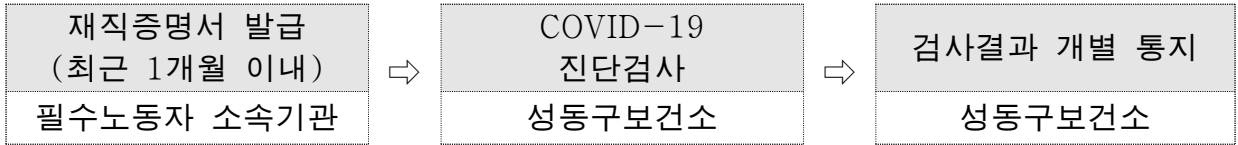
① 온라인 심리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구청·보건소·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심리검사 팝업 운영(자가검진) ▶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자가진단 검사 ▶ 카카오톡 채널 운영(심리검사 및 상담) 	 <small>성동구청신건강복지센터</small>
② 심리상담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비대면 상담서비스 제공(전화, 홈페이지 등) ▶ 24시간 핫라인 운영(1577-0199) ▶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외부전문가 상담 연계 	
③ 마음건강 상담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성동구 협약 정신의료기관 심리상담비 지원 	

- 추진실적: 성동형 필수노동자 156명
- 소요예산: 기존 심리치료지원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별도 소요예산 없음

③ 필수노동자 코로나19 진단 검사 지원

질병예방과

- 사업목적: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전염병 확산 방지
- 사업내용: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



- 추진실적: 6명 (소요예산: 372천 원)
 - 누구나 코로나19 검사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('20.12.14.~' 21. 2.14.)
 - 으로 현재는 중단 ⇨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연장 여부 등 변경시 탄력적 운영

<p>서울신문 2020년 11월 02일 월요일 02면 전국</p> <p>성동 "필수노동자 여러분, 독감 예방접종 무료입니다"</p> <p>서울 성동구가 지난 11월 2일 성동구청을 유지를 위해 필수노동자 업무에 지원하는 필수노동자 지원(대상으로 연세대학교(서울) 무도 해방당 중을 하고 있다.</p> <p>구는 지난 11월 2일 성동구청을 유지를 위해 필수노동자 업무에 지원하는 필수노동자 지원(대상으로 연세대학교(서울) 무도 해방당 중을 하고 있다.</p>	<p>성동구, 필수노동자 '심리 안정' 챙긴다</p> <p>성동구 구청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 안전 및 취약계층 돌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에 나섰다.</p> <p>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업종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필수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자유를 위한 우선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달부터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.</p>	<p>필수노동자 마음건강 돌보는 성동구</p> <p>서울 성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 속에서도 주민 안전과 취약계층 돌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.</p> <p>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업종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필수노동자들의 심리적인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다. 이에 구는 필수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자유를 위한 심리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,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.</p>
<p>서울신문(11.2) 성동 필수노동자 독감 예방접종 무료</p>	<p>헤럴드경제(11.17) 성동구 필수노동자 심리안정 챙긴다</p>	<p>서울경제(11.17) 필수노동자 마음건강 돌보는 성동구</p>

IV 향후 계획

- 필수노동자 인식개선 언론홍보 지속추진 ----- 해당부서
-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--- 21.2월중
-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--- 용역 완료 후 (21.3 ~ 6월). 끝.